

별정직 직원 인사규정

제1조 (정의) 별정직 직원이라 함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임용되는 직원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호서대학교 소속 별정직 직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 (별정직의 구분) 별정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3. 1)

1. 행정분야: 평생교육원 및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일반행정 업무에 특별채용된 자
2. 기술분야: 연구실 안전관리센터, 산업안전기술연구센터 및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기술업무에 특별채용된 자

제3조 (임용권자) 별정직 직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4조 (임용자격) ① 별정직 직원은 당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기독교인이어야 하며, 법인정관 제63조(사무직원 자격)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별정직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제4조의2 (경력환산) 별정직 직원의 경력환산은 본교 직원인사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제5조 (임용절차) 별정직 직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제청서·임면장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직원인사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제6조 (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 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과 같다.

1. 5급 상당 이상 : 58세
2. 6급 상당 이하 : 55세

② 별정직 직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말에 당연 퇴직된다.

제7조 (당연퇴직) ① 별정직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② 당해 별정직 직원의 임용목적이 된 업무 또는 부서가 폐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7조의 2 (직권면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 (신설 2010. 3. 1)

1. 징계처분으로 해직이 결정되었을 때
2. 정신 또는 신체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직무능력의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불량할 때

제8조 (부서교류) 별정직 직원은 최초임용의 목적이 된 부서에만 전속근무하며 타 부서에 교류 근무할 수 없다.

제9조 (근무성적의 평정) 소속부서의 장은 일반직직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 직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일반직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 직원을 일반직 및 기술직, 기능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보수) ① 별정직 직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직종에 따라 별도 구분하여 지급한다.

1. 행정분야: 일반직 급여 이하 적용
2. 기술분야: 기술직 급여 이하 적용
3. <삭제 2010. 3. 1>

② 보수의 결정은 채용 당시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근무 중인 별정직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11.5)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1)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